

울산광역시 동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672호 2026. 6. 4.(화)

훈 령

○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청년광장 운영 규정 1

고 시

○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8

○ 도로명주소 고시 9

공 고

○ 하천법 위반(불법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10

○ 공유수면 무단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3

안
내

- 동구 전자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정기)되오니 공보게제 의되는 매주 수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동구 홈페이지(www.donggu.ulsan.kr) → 동구소식 → 고시/공고 → 동구공보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 동구 편집 : 기획예산실(☎ 209-3047, 행정 3047)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청년광장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류재균

2026년 6월 4일

울산광역시 동구 훈령 제325호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청년광장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년들의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 및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해 조성된 일산청년광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일산청년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988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이란 광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신청자”란 자신의 명의를 책임하여 광장을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장이 청년들의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 및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제5조(사용료) 광장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사용신청) ①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산청년광장 사용(변경)신청서

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일 60일 전부터 사용일 3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광장 사용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별지 제1호서식의 일산청년광장 사용(변경)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일 3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사용신청 수리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신청을 접수한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게 해야 한다.

1.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누락 여부
2. 사용의 적합성 및 운영 목적 부합 여부
3. 제8조에 따른 사용 우선순위 및 중복 신청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3. 주민의 신체·생명 또는 재산을 침해하거나 교통 또는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광장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8조(사용 우선순위) 신청자의 사용 일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는 우선하여 수리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 또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3.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9조(사용신청에 대한 통지) 구청장은 광장 사용신청의 수리 여부를 신청자에

게 7일 이내 통지해야 하며,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제10조(신청사항 변경)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사용신청을 수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협의하여 신청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1. 국가, 울산광역시 또는 울산광역시 동구가 공익을 위해 광장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주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호공 보2026. 6. 4.(목)

<별지 제1호서식>

일산청년광장 사용(변경) 신청서

신청인

성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스

휴대폰: 사무실:

연락 책임자

성 명

행사내용

◦ 행 사 명:
◦ 행사주최 / 주관 / 후원:
◦ 행사내용:
◦ 출 연 진:
◦ 관계요원:
◦ 예상관객:

사용예정 인원(명)

사용장소 (구역)

사용일시

년 월 일 요일(: ~ :)
※ 준비시간, 정리시간 포함

시설물 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

※ 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 시설물 설치 시 작성

변경사항

※ 변경신청 시 작성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청년광장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수집·이용 목적: 일산청년광장 사용신청 및 관리
2.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3. 보유기간: 사용 승인 신청 후 3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 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동의 ☐ / 비동의 ☐

☒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일산청년광장 행사(공연) 안전관리계획서(대규모 행사(공연) 대상)

- 4 -

제 호공 보2026. 6. 4.(목)

<별지 제2호서식>

행 사 계 획 서

1. 공연계획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시 간	공연내용(곡목 등)	사용악기 및 장비 (앰프 출력 포함)
연주			
노래			
퍼포먼스			

2. 기타 부대행사 내용(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 사용악기 및 공연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기재되지 않은 내용의 공연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행사계획서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계획서(홍보물 등)로 대체 가능

- 5 -

제 호공 보2026. 6. 4.(목)

<별지 제3호서식>

일산청년광장 행사(공연) 안전관리계획서

공연팀명: (대표자:)

공연일시: . . (요일) 시 ~ 시

공연내용

※ 화염, 불꽃 등 위험한 공연 여부 필수기재, 공연 당일 기재한 내용과 다른 위험한 공연을 하는 경우, 경고 및 제재 취함.

☐ 안전관리요원 배치계획 ※ 안전관리임무는 안전관리계획의 유형별 기재 바람

연번	구분	성명	연락처(휴대폰)	안전관리임무
1	책임자			
2	안전관리요원			
3	안전관리요원			

☐ 안전관리 계획 ※ 사고예방 및 비상상황 발생 시 관람객 등 안전을 위해 취해야 할 사항을 상세 기재

유형별	안전관리 계획	비고
차량 및 관람객 통제		
대피 유도		
응급의료		
화재 등 기타		

☐ 화염, 불꽃 등 위험한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본을 제출할 것을 동의함 ☐

☐ 위 행사(공연)을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히 운영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 6 -

제 호공 보2026. 6. 4.(목)

1. 제정이유

☐ 일산청년광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청년광장 활성화 및 주민들의 문화 향유 도모

2. 주요내용

가. 일산청년광장의 목적·위치, 정의, 구청장의 책무(제1조 ~ 제4조)

나. 사용료, 사용신청, 사용신청 수리 및 검토(제5조 ~제7조)

다. 사용 우선순위, 사용신청에 대한 통지, 신청사항 변경(제8조~제10조)

- 7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울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6-45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4일

울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운곡교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동 548 일원	울산광역시 동구청 건설과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m 이상 100m 미만인 도로교량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매년 2월 15일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반기별(연2회)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도로교량
달맞이교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233-14 일원	울산광역시 동구청 공원녹지과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매년 2월 15일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반기별(연2회)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인도교량
해맞이교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233-13 일원	울산광역시 동구청 공원녹지과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매년 2월 15일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반기별(연2회)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인도교량

210mm×297mm[백상지(80g/㎡)]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 574호

하천법 위반(불법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를 실시 하였고 원상회복 의무자가 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 공 고 명: 하천법 위반(불법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6. 6. 1. ~ 6. 15.(14일간)
-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 법적근거: 하천법 제33조·제69조·제95조,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7조·제27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 공고대상 및 내용

하천 구분	위 치	행위자	불법점용물	처분내용	대집행 방법	관련법
서부천	서부동 955-43	미상	그물망 및 철조망	불법 점용물 자진 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에 따른 행정대집행	철거	소하천정비법
운곡천	주전동 산15-3	미상	불법경작	불법 점용물 자진 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에 따른 행정대집행	철거	하천법

울산광역시동구 고시 제2026 - 46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4일

울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부여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1	방어동 1090-1번지	문재1길 60	2009-10-07	2026-06-04	방어진 목장으로 통하는 문이 있었던 옛 지명에서 유래하며, 이 문제블럭 구간에서 첫번째로 시작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해당 도로명을 부여함.

+

○ 도로명주소 폐지

연번	폐지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 폐지사유
1	화진길 113	2026-06-04	건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민원지적과(☎052-209-384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i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급변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 주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가. 「하천법」 제33조(「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유수의

흐름을 현저히 방해하는 점유물을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자가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대집행함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대집행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또 한,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 분(「소하천정비법」 제2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고기간 경과 후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봄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울산광역시 동구청 건설과(☎ 052-209-3654)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574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 미상

주소 : 미상

2026년 3월 27일부터 울산광역시 동구청 공고 제2026-307호, 제2026-338호, 제2026-511호로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하였으나, 지정된 최종기한(26. 5. 29.)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구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대집행 일정은 기상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26년 6월 16일 ~ 6월 19일 (기간 중 1일)	건설과	하수관리팀장	김태형	대집행 후 징수 (소요비용 추후 부과)

2026년 6월 1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 576호

공유수면 무단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각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를 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 공 고 명: 공유수면 무단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 공고기간: 2026. 6. 04. ~ 2026. 6. 19. (15일간)
- 처분의 제목: 행정대집행 계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법적근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제21조(원상회복 등),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제21조(처분 사전통지)
- 위반내용: 공유수면 구역 내 무단점용 및 불법 시설물 설치
- 공시송달 대상 및 처분내용

위 치	행위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된 처분 내용
동부동 167-22	미상	공유수면 구역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동부동 645			
화정동 산 30-1			
화정동 산 53-1			
화정동 944-2			

-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6. 6. 19. 까지
 - 제 출 처: 울산광역시 동구청 건설과 (☎ 052-209-3635)
 - 제출방법: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 기타사항: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공유수면 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 내 불법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공유수면 내 불법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당사자	성명(명칭)	미상					
	주 소	미상					
	불법행위 위치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167-22 번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공유수면 구역을 불법 점용하여 사용함에 따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위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원상회복 등)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청	부서명	건설과	담당자	엄정연
		주소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		전화번호	052-209-3635	
		전자우편 주소	3156yun@korea.kr		팩스번호	052-209-3629	
	제출기한		2026년 6월 19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건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건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건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건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유수면 내 불법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공유수면 내 불법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당사자	성명(명칭)	미상					
	주 소	미상					
	불법행위 위치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645 번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공유수면 구역을 불법 점용하여 사용함에 따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위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원상회복 등)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청	부서명	건설과	담당자	엄정연
		주 소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			전화번호	052-209-3635
		전자우편 주소	3156yun@korea.kr			팩스번호	052-209-3629
	제출기한		2026년 6월 19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공유수면 내 불법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공유수면 내 불법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당사자	성명(명칭)	미상					
	주 소	미상					
	불법행위 위치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산 30-1 번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공유수면 구역을 불법 점용하여 사용함에 따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위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원상회복 등)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청	부서명	건설과	담당자	엄정연
		주 소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		전화번호	052-209-3635	
		전자우편 주소	3156yun@korea.kr		팩스번호	052-209-3629	
	제출기한		2026년 6월 19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건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의견제출 내용	당사자	성명(영칭) 주소 (전화번호:)
	의 건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유수면 내 불법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공유수면 내 불법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당사자	성명(영칭)	미상					
	주 소	미상					
	불법행위 위치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산 53-1 번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공유수면 구역을 불법 점용하여 사용함에 따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위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원상회복 등)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청	부서명	건설과	담당자	엄정연
		주 소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		전화번호	052-209-3635	
		전자우편 주소	3156yun@korea.kr		팩스번호	052-209-3629	
	제출기한		2026년 6월 19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건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의견제출 내용	당사자	성명(영칭) 주소 (전화번호:)
	의 건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유수면 내 불법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공유수면 내 불법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당사자	성명(영칭)	미상					
	주 소	미상					
	불법행위 위치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944-2 번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공유수면 구역을 불법 점용하여 사용함에 따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위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원상회복 등)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청	부서명	건설과	담당자	엄정연
		주 소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		전화번호	052-209-3635	
		전자우편 주소	3156yun@korea.kr		팩스번호	052-209-3629	
	제출기한	2026년 6월 19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영칭)

주소

(전화번호:)

당사자

의견

기타

내용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절지(80g/㎡)]

- 24 -

울산광역시 동구 건설과 제2026 - 576호

행정대집행 고고서

수령인: 미상

주 소: 미상

공유수면 구역 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사용하고 있는 귀하 소유의 시설물, 적치물 등으로 인하여 민원 발생과 공유수면 관리상의 문제(환경훼손, 통행·이용 저해, 유수의 흐름 방해 등)를 야기하고 있는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원상회복 등)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2026년 6월 19일(금)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며 이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울산광역시 동구청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또는 종류	대집행 방법
동부동 167-22	불법점착 및 가설건축물	철거

2026년 6월 4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 25 -

제 호 공 보 2026. 6. 4.(목)

제 호 공 보 2026. 6. 4.(목)

울산광역시 동구 건설과 제2026 - 576호

행정대집행 고고서

수령인: 미상

주 소: 미상

공유수면 구역 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사용하고 있는 귀하 소유의 시설물, 적치물 등으로 인하여 민원 발생과 공유수면 관리상의 문제(환경훼손, 통행·이용 저해, 유수의 흐름 방해 등)를 야기하고 있는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원상회복 등)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2026년 6월 19일(금)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며 이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울산광역시 동구청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또는 종류	대집행 방법
동부동 645	불법점착 및 가설건축물	철거

2026년 6월 4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 26 -

울산광역시 동구 건설과 제2026 - 576호

행정대집행 고고서

수령인: 미상

주 소: 미상

공유수면 구역 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사용하고 있는 귀하 소유의 시설물, 적치물 등으로 인하여 민원 발생과 공유수면 관리상의 문제(환경훼손, 통행·이용 저해, 유수의 흐름 방해 등)를 야기하고 있는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원상회복 등)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2026년 6월 19일(금)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며 이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울산광역시 동구청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또는 종류	대집행 방법
화정동 산 30-1	불법점착 및 가설건축물	철거

2026년 6월 4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 27 -

울산광역시 동구 건설과 제2026 - 576호

행정대집행 고고서

수령인: 미상
주 소: 미상

공유수면 구역 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사용하고 있는 귀하 소유의 시설물, 적치물 등으로 인하여 민원 발생과 공유수면 관리상의 문제(환경훼손, 통행·이용 저해, 유수의 흐름 방해 등)를 야기하고 있는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원상회복 등)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2026년 6월 19일(금)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며 이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울산광역시 동구청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또는 종류	대집행 방법
화정동 산 53-1	불법경작 및 가설건축물	철 거

2026년 6월 4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울산광역시 동구 건설과 제2026 - 576호

행정대집행 고고서

수령인: 미상
주 소: 미상

공유수면 구역 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사용하고 있는 귀하 소유의 시설물, 적치물 등으로 인하여 민원 발생과 공유수면 관리상의 문제(환경훼손, 통행·이용 저해, 유수의 흐름 방해 등)를 야기하고 있는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원상회복 등)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2026년 6월 19일(금)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며 이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울산광역시 동구청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또는 종류	대집행 방법
화정동 944-2	불법경작	철 거

2026년 6월 4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공유수면 무단점용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동부동 167-22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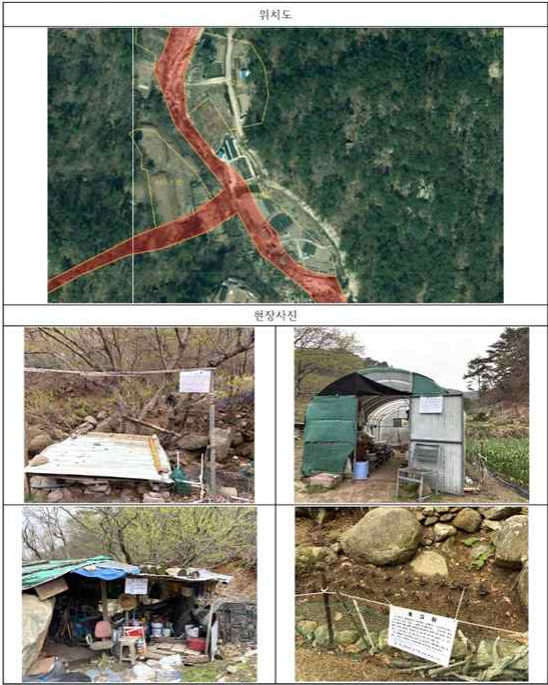
위치도



현장사진



□ 동부동 645번지



□ 화정동 산 30-1



□ 화정동 산 53-1

위치도



현장사진



□ 화정동 944-2

위치도



현장사진

